

[별표 1]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(제15조 제1항 관련)

거래정지사유	거래정지	
	기간	대상
<p>1. 「조달사업법」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(「조달사업법」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)</p> <p>가.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</p> <p>(1) 1차 적발</p> <p>(2) 2차 적발</p> <p>(3) 3차 이상 적발</p> <p>나. 단가인하요구에 불응할 경우 : 단가인하 시까지 거래정지</p> <p>다. 환수 요구에 불응할 경우 : 환수 시까지 거래정지</p>	<p>1월</p> <p>3월</p> <p>6월</p> <p>-</p> <p>-</p>	<p>세부품명</p> <p>세부품명</p> <p>세부품명</p> <p>세부품명</p> <p>세부품명</p>
<p>2. 「조달사업법」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(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)</p>	<p>6월</p>	<p>세부품명</p>
<p>3. 「조달사업법」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(다른 계약상대자의 입찰·계약체결·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·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한 경우)</p>	<p>6월</p>	<p>업체</p>
<p>4. 「조달사업법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(제14조에 따른 불공정조달행위와 관련된 가격 및 실태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) ∴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</p>	<p>1월</p>	<p>계약</p>
<p>5. 「조달사업법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(계약된 품목에 대한 허위정보 등록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)</p> <p>가. 상품일반정보, 상품상세정보, 인증정보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</p> <p>나. 구체적 증거자료의 제시 없이 다른 계약상대자나 계약담당공무원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</p>	<p>6월</p> <p>6월</p>	<p>세부품명</p> <p>계약</p>
<p>6. 「조달사업법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(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, 인·허가,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,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)</p>		

<p>가. 제12조의6에 따른 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(1) 1차 위반 (2) 2차 이상 위반</p>	<p>1월 3월</p>	<p>계약 계약</p>
<p>나. 제13조제2항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: 중간점검 완료 시까지 위반한 경우)</p>	<p>-</p>	<p>계약</p>
<p>7. 「조달사업법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(계약된 품목의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)</p>		
<p>가. 제품의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 (1) 사망사고 (2) 부상사고</p>	<p>12월 9월</p>	<p>계약 계약</p>
<p>나. 기타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</p>	<p>6월</p>	<p>계약</p>
<p>8. 제15조제1항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(정당한 사유없이 상품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) : 상품정보 제공시까지</p>	<p>-</p>	<p>품목</p>
<p>9. 제15조제1항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(제12조의7(품질관리 통보의무)를 위반한 경우)</p>		
<p>가. 7일 이후에 통보한 경우 : 지체일수만큼 정지</p>	<p>-</p>	<p>세부품명</p>
<p>나. 통보하지 않은 경우</p>	<p>1월</p>	<p>세부품명</p>
<p>(1) 1차 위반</p>	<p>3월</p>	<p>세부품명</p>
<p>(2) 2차 위반</p>	<p>-</p>	<p>-</p>
<p>(3) 3차 위반 : 해당 계약 해지</p>	<p>-</p>	<p>-</p>
<p>다. 품질검사요구에 불응할 경우 : 품질검사 시까지 거래정지</p>	<p>-</p>	<p>세부품명</p>
<p>10. 제15조제1항제8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(정당한 이유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)</p>	<p>1월</p>	<p>계약</p>
<p>: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</p>		
<p>11. 제15조제1항제8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(계약조건 등에서 납품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)</p>	<p>1월</p>	<p>계약</p>
<p>: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</p>		

<p>12. 제15조제1항제8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(제19조제4항에 따른 불공정한 공동행위의 확인을 위한 자료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) :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</p>	<p>1월</p>	<p>계약</p>
<p>13. 제15조제1항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(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, 우선(의무)구매대상 물품 등의 상품정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납품한 경우)</p>	<p>2월</p>	<p>계약</p>
<p>14 제15조제1항제8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(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수요기관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)</p>	<p>1월</p>	<p>계약</p>

※ [주]

- ① 위 표에서 “세부품명”이라 함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다수공급자 계약 품목 중 계약조건 위반 사항과 관련된 품목과 세부품명이 동일한 품목이 거래정지대상임을 의미한다.
- ② 위 표에서 “계약”이라 함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중 계약조건 위반 사항과 관련된 품목과 동일 계약서에 포함된 품목이 거래정지대상임을 의미한다.
- ③ 위 표에서 “업체”라 함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모든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이 거래정지대상임을 의미한다.
- ④ 위 표에서 "보수비율"이라 함은 물품보증기간 중 총 납품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.